

전주지방법원 2021. 9. 15 선고 2021가단610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

담당변호사 문영기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9. 15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/6 지분에 관하여,

가. C과 피고 A이 2018. 9. 22.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
나. 피고 B은 피고 A에게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9. 4. 3. 접수 제2696호로 마 친 각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다. 피고 A은 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판결)

판사 곽경평

별지